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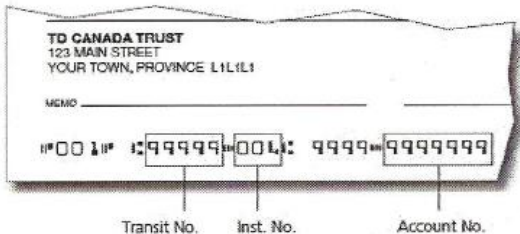
Michelle Kim

Accounting Corporation

# 2023 Personal Tax Return Form

\* 기입 안내(3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신 후 작성해 주세요.

1. Name: (영문) (한글)	2. SIN Number:
3. Citizen / PR Card Holder / Visa Holder Date of enter or departure:  World Income:	4. Date of birth:  5. Male / Female
6. Phone Number:	7. E-mail:
8. Mailing address and Postal Code:  Do you want to change your addres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ou move into another province during 2023, fill the date of moving:	
9. Marital Status  Single / Married / Common law / Divorced / Separated / Widowed  If your marital status changed during 2023, Date of change:	10. How would you like to receive NOA?  Canada Post Mail / Email
11. Is this your very first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2. Did you own foreign property with a total cost of more than \$100,000 in 2023?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3. Documents to file  <input type="checkbox"/> T4 <input type="checkbox"/> How many T4s do you have? _____  <input type="checkbox"/> Previous year's assessment (NOA)  <input type="checkbox"/> T4E <input type="checkbox"/> T4A <input type="checkbox"/> T4A(P) <input type="checkbox"/> T4A(OAS) <input type="checkbox"/> T5 <input type="checkbox"/> RRSP <input type="checkbox"/> FHSA  <input type="checkbox"/> Medical Expenses / Premium paid to group health benefit <input type="checkbox"/> Donation  <input type="checkbox"/> Child Care Expenses <input type="checkbox"/> Tuition(T2202A) / Student Loan Interest  <input type="checkbox"/> First home buyer <input type="checkbox"/> Moving Expenses <input type="checkbox"/> Union Payments <input type="checkbox"/> Tool Purchases  <input type="checkbox"/> Home office expenses (Flat rate: _____days or attach T2200)-see page 5  <input type="checkbox"/> Direct Deposit Information (최초등록이나 계좌변경시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Already registered: 이미 등록하신경우는 비워두세요 <input type="checkbox"/> Wish to start or change direct deposit info  Transit No.: Inst No.: Account No.:	



Dependent 1 (만 18세 이하만 등록)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Dependent 2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Dependent 3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Dependent 4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You will provide me with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necessary to compil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representations in the personal tax return remains with you.

Also, you agree that Michelle Kim Professional Accountant not be liable for any further claim or response to third party on behalf of you.

저는 세금 파일만 대행해 드릴뿐 CRA 대리인은 아니며 파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CRA 에서 개인세 금신고, GST, 차일드베네핏 관련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시거나 Audit 요청을 받으실 경우 저에게 의뢰하시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취합해 하나의 이메일에 첨부해 주세요.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실 경우 정보 취합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te \_\_\_\_\_

Printed Name \_\_\_\_\_

Signature \_\_\_\_\_

## 기입 안내

1. 신카드에 있는 성함을 적어주세요.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지 구분해서 정확히 적어주세요.
2. 신번호를 적어주세요
3. 시민권자/영주권자/비자 에 표시해 해주세요. **2023년에 처음 캐나다를 입국하셨거나 떠나신분은 입국/떠나신 날짜에 표시하시고 날짜를 적어주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입국시까지 한국에서 세전수입을 한화로 "World Income" 란에 적어주세요. 없으신 경우에는 '0'을 기입해주세요.**
4. 생년월일 적어주세요.
5. 성별을 적어주세요
6.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7.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8. 주소를 적어주세요. 2023년중 이사하셔서 주소가 바뀌었으면 YES 에 체크해주세요.  
2023년중 주 이동을 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주로 이주하신 일자를 적어주세요.
9. 싱글/결혼/사실혼/이혼/별거/배우자 별세 표시해 주세요.

배우자가 한국에 계실경우 배우자의 연간 세전 수입 국제청 서류 발급 받으셔서 같이 보내주세요. 이 서류를 안주시면 서류미비로 파일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배우자도 수입을 합산하여 GST, 차일드 베네핏이 계산됩니다.

10. 파일 결과를 우편으로 편지로 받으실지 이메일로 받으실지 체크해 주세요. 이메일 받기로 설정하시는 경우 NOA에 대한 세부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것이 아닌 단지 새로운 NOA가 있다는 알람만 받으시는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직접 my cra account 에 접속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캐나다에서 처음하시는 세금신고이면 YES 에 표시해 주세요.
12. 한국에 1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YES 에 표시해 주세요. 2.5 억이 넘으면 추가서류가 있으니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외국재산신고는 추가비용(\$20-\$30)이 발생합니다.
13. 신고하셔야 할 서류에 체크하시고 첨부해 주세요. 은행으로 디렉트파짓 받고싶으시면 은행계좌정보 (Transit No, Inst No, Account No) 적어주세요. 이미 등록해 놓으셨으면 빈칸으로 두세요.

올해 처음 집구매하신분, 이사비용 발생하신분, 의료비용 발생하신분, 툴 구매하신분은 따로 문의해 주세요.

14. 자택근무를 한 일반 employee 가 고용주로부터 T2200 서류를 받으신 경우 5페이지에 첨부된 표에 비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된 비용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저에게 제출하지 마시고 직접 보관하세요.  
T2200 만 전달해주세요. 고용주가 T2200 서류 발급을 안해줄 경우 하루 \$2달러 요율(Max \$500)을 적용받으시니 신청서 빈칸에 날짜를 적어주세요.
15. 만 18세 이하 자녀 정보를 Dependent란에 적어주세요.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자녀분은 Dependent 가 아니고 따로 신청서를 적어주세요.
16.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2page에 날짜,성함, 사인 해주세요.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취합해 하나의 이메일에 첨부해 주세요.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실 경우 정보 취합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일반 사진으로 찍으면 어둡고 숫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CS Scanner 나 Cam Scanner 등 핸드폰 스캐너 기능이나 앱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eduction 항목에 대한 안내

1. Medical expense는 해당 신고년도 안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나, 이전년도에 청구한 금액은 다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부부 및 만 18세 자녀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소득이 낮은 분 신고서에 비용 청구해드리며, 소득의 3% 이상이 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참고) 알버타주는 마사지비용 청구 안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s-33099-33199-eligible-medical-expenses-you-claim-on-your-tax-return.html#wb-auto-4>
2. RRSP를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고 RRSP contribution room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년도 NOA(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주세요.
3. Tuition을 납부하신 경우, T2202 서류를 보내주시고 Unused tuition credit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 학비 크레딧을 적용해드리기 위해 이전년도 NOA(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주세요.
4. Child care expense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만 16세 이하의 자녀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1) caregiver/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2)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res  
3) 캠프의 주요 목표가 어린이를 돌보는데 있는 주간 캠프 및 주간 스포츠 학교  
4) 기숙학교, overnight sports schools,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캠프  
cf) 정규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학습 프로그램(sports study program)의 수업료, 여가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비용, 스카우트 연간 등록, 교육기관의 교육비용과 관련된 수수료 등은 공제 불가능.
5. Union payment는 (T4에 union due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union due를 납부하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6. Tool purchase는 Employed tradespersons의 경우에는 Tool 구매 금액이 \$1,368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최대 \$5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ligible apprentice mechanic(견습 정비사)의 경우 고용되어 employment income을 벌기 위해 구매한 tool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7. First home buyer는 고객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집을 처음 구매하였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크레딧으로 \$1,500 의 추가리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Moving expense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새로운 직장 혹은 학교의 이유로 이사한 경우,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단순 거주지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이동 거리가 40Km이상 되어야 비용 공제 가능하며, 한국에서 캐나다로 처음 이주하신 경우에 발생한 이사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말씀해주시면 비용 공제를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Moving expense 비용공제에 해당하시는 경우 \$30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Calculation of work space in the home expenses

## 홈오피스 비용 계산서

Check list\_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 2023 년도중 자택근무하신 기간이 총 근무기간의 절반을 넘었나요?
- 근무하시는 회사로부터 T2200 을 받으셨나요?
- 비용청구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오"가 있을경우 Flat rate \$2/Day 가 적용됩니다. 근무일수를 1 페이지에 기입해주세요.

- Flat rate 신청의 경우도 2023 년도중 자택근무하신 기간이 총 근무시간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모두 "예" 일경우 아래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Area of home used for workspace	(홈오피스로 사용하신 공간)	
Total Area of home	(집 전체 공간)	
Office supplies	(자비로구매하신 오피스용품)	
Electricity, heat, water, internet	(전기,히팅,물, 인터넷)	
Maintenance	(유지보수_시큐리티,청소,집수리)	
Home Insurance	집보험	
Property taxes	(재산세)	
Rent	(렌트비)	